

제1절 저작권 계약서 예시

著作权使用许可合同

许可方：(甲方)

被许可方：(乙方)

甲、乙双方经协商，对著作权的使用达成如下协议：

一、许可标的

甲方对_____享有著作权。

二、权利保证

甲方保证该著作权是一项完整的权利，没有权利瑕疵；否则，甲方愿意承担因该权利瑕疵对乙方造成的一切损失的赔偿责任。

三、许可性质

甲方许可乙方在中国大陆区域内对本合同项下著作权享有排他性的独占使用权。

四、许可期限

本许可的有效期限自_____年___月___日至_____年___月___日止，共___年。

五、许可费用

乙方取得该著作权独占使用权后，应当在_____年___月___日之前一次性向甲方支付许可使用费_____元。

六、乙方保证

乙方保证将该学科使用的著作权用于符合中国大陆法律要去的领域，如乙方违反该义务，将由乙方自行承担由此造成的一切法律后果。

七、侵权处理

如第三方在本许可有效期限内侵害一方已经取得的该著作权独占许可

使用权，乙方有权以自己的名义在中国大陆地区，以提起诉讼、请求仲裁或第三方直接达成和解协议等形式解决侵权纠纷。

甲方未于乙方协商同意，在中国大陆地区不得自行与第三方对有关侵权事宜达成任何和解协议或者以其他方式向第三方主张赔偿权利。

八、合同有效期的中止条件

出现下列情形之一的，合同一方有权中止履行本合同：

1. 被许可方逾期未交付著作权许可使用费；
2. 许可方将独占使用许可的著作权，另外许可第三方使用。

九、违约后果

如在违约事由出现或另一方应当知道对方一位月是起的一个月内：

1. 违约方未消除或者未完全消除违约事由，则本合同自动终止，守约方有权要求违约方承担违约金_____元，并有权要求违约方赔偿守约方的经济损失；
2. 违约方消除了违约事由，则本合同应当继续履行，守约方有权要求违约方赔偿损失；如违约方不予赔偿，则视为违约方未在上述期限内消除违约事由，守约方有权根据上述本合同第九条第1款规定处理。

十、本合同有效期限

本合同有效期限等同于本合同第四条所指的许可有效期限。

十一、合同纠纷的解决方式

如在本合同履行过程中双方发生争议，双方首先力争通过友好协商解决；如协商不成，任一方有权将该争议提交_____国_____法院管辖。

十二、法律の适用

本合同の准据法为中华人民共和国法律。

许可方：（章）

被许可方：（章）

代表人：

代表人：

地址：

地址：

邮政编码：

邮政编码：

电话：

电话：

开户银行：

开户银行：

银行账户：

银行账户：

合同签订地点：

合同签订日期： 年 月 日

1. 라이선스계약

1. 허락하는 라이선스의 확실한 설정

먼저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확실히 설정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라이선스계약의 대상이 되는 문화콘텐츠들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이용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계약서상 확실히 설정하여야 한다.

2. 허락하는 권리의 보증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서는 계약상에 양도하는 권리가 하자가 없는 완전한 권리임을 보증해야 한다. 권리의 하자로 인해 라이선서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라이선서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3. 허락하는 권리의 성질

라이선스 계약에서 그 라이선스가 독점적인지 비독점적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독점적 사용권을 라이선시에게 부여할 경우 다른 라이선시와는 계약을 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은 독점적 라이선스에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그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라이선스 사용기간

라이선스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한다. 라이선스 사용기간을 장기로 할 것인지 단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라이선시의 실력과 규모가 믿을 만 하다면 부담이 크지만 계약의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장기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라이선시와 처음 거래를 하거나 신뢰도가 많이 쌓이지 않은 단계에서는 단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용료 지불

라이선스 사용료의 지불방법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은 각 콘텐츠별로 일시불로 사용료를 지불할 수도 있고 콘텐츠 이용에 따른 판매 실적에 따라 런닝 로열티 방식, 또는 선금급+런닝 로열티 방식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각 콘텐츠의 특성과 중국시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시불로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 돈을 지불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런닝 로열티 방식을 이용한다면 런닝 로열티의 확실한 기준(예: 매출액, 순이익)과 로열티의 정산주기도 확실히 정해야 한다.

6. 라이선시의 보증

라이선시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중국법률 계약상 약정에 부합되는 영역에서 사용할 것을 보증하고 만약 라이선시가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법률적 책임은 라이선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권리침해 발생시 대응방법

계약 유효기간 내에 제3자에 의해 권리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중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라이선시가 자신의 명의로 중국에서 행정기관에 신고, 소송, 중재 또는 제3자와 합의 등의 형식으로 권리침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라이선서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유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8. 계약해지요건

계약기간 내 쌍방 중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다른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보통 구체적인 해지요건을 표기하는데 일정기간 내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라이선시가 사용 허락된 권리 또는 허락된 지역을 벗어난 사용 등의 위약행위가 있을 경우 등이 있다.

9. 위약책임

계약쌍방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약책임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약정하는데 첫째, 위약자가 위약행위가 일어난 후 위약사유를 소멸시키지 못했을 때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약정을 준수한 일방은 위약자에게 위약금과 위약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둘째, 위약자가 위약사유를 소멸시켰을 때 계약은 계속 이행 되어야 하고 약정을 준수한 일방은 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 계약의 유효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1. 계약의 분쟁 발생시 해결방법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를 명확히 명시한다. 먼저 쌍방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의 소송이나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명시한다. 소송을 통해 해결할 때는 관할법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약정할 때는 중재관할을 어느 중재기관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제3국의 중재기관 또는 피신청인 소재국 중재기관을 중재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중국과 같이 중재기관이 다수인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중재기관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2. 법률의 적용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한다. 준거법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어느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고려해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분 라이선스가 중국측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이행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꼭 그것에 따를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II. 계약서 항목별 주의사항

내용 요약	검토 사항
(서문) 당사자	- 영업집조 사본을 첨부케 하고 법정대표확인
권리제공자(라이선서) 권리도입자(라이선시)	- 법정대표가 직접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첨부
(목적물) 사용권 또는 소유권	목적물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

계약제품/용도/사용방식/수량/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계약제품을 구체적/ 한정적으로 명시요망 - 계약목적물의 종류 또는 형태에 따라 용도, 사용방식, 수량, 횟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계약지역	지역을 한정하는 경우 지역의 명시를 분명하게 할 것
유효일	발효조건 및 사용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명시
(사용권의 허락) 계약지역 내에서 라이선시가 출판/판매/방영/공연하는 권리에 대해 독점 또는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비독점 여부 및 사용권리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 독점권 취소요건 강화
사용료(로열티) 라이선시 사용시의 로열티	로열티지불 대상/비대상 여부 및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이선시 이외의 자가 사용시 로열티/화폐종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권의 범위를 라이선시에 제한 하는지 아니면 라이선시가 제3자에게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후자의 경우 로열티 계산 방식을 각 경우에 따라 상세히 약정
로열티 지급기한	로열티의 지급시기 확정
지급통화 및 지급수단	지급통화, 지급수단 및 지급처 명시
지체상금	로열티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을 가급적 높게 책정
송금규제시의 조치사항	라이선시 국적국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송금규제에 대비하여 라이선서 지정계좌로 송금하도록 명시
정확한 회계장부의 유지 및 감사권	라이선시에 의한 로열티 산출/지급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명시적 청구
(사용방법) 불법적인 사용금지	라이선서의 권리보호 목적을 위해 계약목적 외 사용금지
라이선서에 의해 승인된 내용/방법으로만 사용	라이선서가 승인한 사용방법에 대한 변경 금지
사용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이에 대한 라이선서의 사전 승인 획득 필요	내용의 오류유무 여부 및 어떤 형태와 퀄리티로 사용이 될 것인지를 체크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을 거치도록 명시

(권리) 권리의 유효성 및 소 유권에 대한 이익제 기 금지	사용권허락 후에도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권자(라이선서)의 단독/독점적 재산으로서 존속함을 인정
불법사용사실 통지의 무 및 분쟁해결을 위 한 협력의무	제3자가 라이선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라이선서가 발견하거나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를 지 우고, 라이선서를 위해 조사 및 분쟁해결에 적극 협력 하 도록 명시
(기간 및 해지) 계약기간	- 계약연장 방식 및 절차 등 명시 - 사전해지 요건 구체적으로 명시
위약에 의한 사전해지	- 최고 절차 없이 서면통지에 의한 계약해지 사항 명시 - 최고 후 일정기간 시정이 안될 경우 계약해지 사항 명시 - 로열티의 지급지체 시 계약해지권 유보
계약해지 후 사용금지	- 계약해지 후 사용을 금지하고 재고/자료 처리방식/절차 명시 - 계약해지 후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면책) 제3자의 청구제기 시 라이선서의 면책	사용과정에서 라이선서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라이선서 면책
(조세공과금) 조세공과금 라이선서 부담	- 상표도입국이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경우 납부영수증 청구 - 라이선서 및 라이선서 판매점 이외의 자에게 공급시의 로 열티 부과 여부/기준
(양도금지)	계약의 지위/권리/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라이선서의 서면동의를 거치도록 명시
(준거법)	일반조항해설 참조
(중재) 중재기관/사용언어	중재기관은 특정을 하고 사용언어/중재인선정방법 등에 대해 약정
(통지) 통지수단 및 주소	통지수단을 열거하고 통지의 발효요건/주소변경고지의무 등에 대해 명확한 약정
(일부무효)	일부의 약정내용이 무효가 되더라도 타 조항은 유효/ 계속 이행 명시
(유효일) 한국 및 현지국가 승인	한국 및 중국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약정
정부승인 미취득시 계 약취소권	중국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라이선서에게 승인 의무를 부가하고 일정기간 내 승인 미취득시 계약해지 가 능하도록 명시

Ⅲ. 계약서 작성시 각 분야별 주의사항

분야	주의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영화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목적물 -권리의 범위 -권리의 사용지역 -권리사용기간 (계약기간) -사용료 -지체상금 -권리사용방법 -계약해지 요건 -조세공과금 -계약상 권리의무 -양도금지 -위약금/위약책임 -분쟁해결방법 	[라이선스]방영지역의 설정/영상제품제작권 부여 여부/온라인 전송권 부여 여부 [공동제작]투자비율/합작조건/저작권귀속/상영국가/수익분배비율 또는 방식/출연자/연출자
방송산업		[라이선스]방송지역 및 횟수의 설정/제3자에 대한 사용허락 통보/사용료지불여부/계산방식 [공동제작]투자비율/합작조건/저작권귀속/방영국가/수익분배비율 또는 방식/출연자/연출자
음악산업		음반제작권/온라인 전송권/모바일서비스사용권/과금주체/과금방식/사용료계산 및 매출보고/감사권실시
애니메이션산업		[라이선스]영화상영권/TV방영권/영상제품제작권/온라인 전송권부여 여부 및 캐릭터의 사용권 부여 여부와 범위 [공동제작]투자비율/합작조건/저작권귀속/방영국가/수익분배비율 또는 방식/출연자/연출자
출판산업		번역권부여 여부/출판권사용지역(중국여권 나라와 지역 고려)/출판부수/인세계산방식(출판부수 기준 유리)/선인세책정/인세지급시기/해적판, 유사저작물 제작금지/원고의 인도일/출판물교부의무/비용부담/내용수정에 대한 사전승인/추가발행 통지의무
게임산업		온라인, 모바일서비스 구분/서비스방법/과금방식/과금자료교부/수익분배방식
모바일콘텐츠산업		서비스방식/과금방식/과금자료교부/수익분배방식(매출규모에 따라 분배비율 조정)
공연산업		유관기관 허가취득/대관책임 및 대관료부담/홍보책임 및 비용/연출책임/장비대여/출연진 섭외/무대장치/광고주모집책임/방송중계여부(방송섭외책임)/광고 및 입장수익관리/공연횟수, 지역/수익분배/재공연의 허락여부 및 그에 따른 수익분배

제2절 외국기업의 법적 대응방법

1.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법

문제가 무엇인지 담당자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텐츠비즈니스의 법적 대응에 대한 대처에는 신속성과 적합성이 요구되나 이러한 리스크에 관해서는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있는 담당자보다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등이 적합하다. 더욱이 콘텐츠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수 없이 많으며 민법, 상법 등의 계약 관련법,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법 등과 같이 광범위한 법률이 관련되고 있고, 로열티와 관련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세법, 외환관리법 등의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해진다. 이렇듯 폭넓은 분야의 법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므로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담당자가 모든 과정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으며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선정해 두는 것이 좋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담당자는 우선 실무적으로 가장 필요한 권리처리의 내용과 방법, 저작권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타 관련법률의 기본지식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법적 권리행사나 분쟁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을 포함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적절한 상담과 업무의뢰를 통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 저작권 침해소송

1. 침해분쟁의 해결방안

저작권침해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저작권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방법, 중재에 의한 해결,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 외에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주로 피해자의 민사구제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 행정구제 및 형사구제에 해당한다.

저작권분쟁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각지의 저작권행정관리기관과 기타 기구 또는 개인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각지의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저작권침해 분쟁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 분쟁조정절차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거나 조정의 성립 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불복할 경우, 불복하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음부터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인민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54조는 당사자는 합의한 서면에 의한 중재계약이나 저작권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간 서면중재계약이 있거나 저작권계약서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못하며 당사자간 서면 중재계약이 없거나 계약서상 중재약정이 없거나 또는 이러한 중재계약이나 중재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피고 주소지 또는 침해행위지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에 의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2. 제소 전 권리보호조치

저작권법 제49조는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는 타인이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만약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그의 합법적 권익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소전 금지령(訴前禁令)이라 하며 한국법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50조는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거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제소 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 받은 후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처분을 내려야 하고, 보전 처분을 내릴 경우 즉시 이를 집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이 15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처분을 해제한다.

3. 관할법원과 제소기간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 제2조는 저작권 민사분쟁사건은 중급이상의 인민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구역의 실제 정황에 따라, 몇 개의 기층인민법원을 저작권민사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동 사법해석 제4조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저작권법 제46조, 제47조에 규정한 침해행위의 실시지, 침해를 한 복제품의 보관지, 압류지, 피고 주소지 관할의 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침해를 한 복제품의 보관지는 그 복제품이 대량 또는 정상적으로 권리침해 목적을 위해 보관, 은닉된 곳을 가리키며, 압류지는 해관, 판권국, 공상행정관리기관 등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침해복제품을 압류한 소재지를 뜻한다. 또한 동 사법해석 제5조는 침해행위 실시지가 다른 다양한 피고를 공동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동 소송에서 원고는 그 중 한 명의 피고의 침해행위 실시지의 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수의 법원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지식재산권분쟁의 절대 다수가 복경시, 상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선택하

고 있는 실정이다.

동 사법해석 제28조는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시효는 저작권자가 그 침해행위사실을 안 날 또는 침해행위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권리자가 2년을 초과하여 제소한 경우라고, 만약 침해행위가 제소 당시 지속되고 저작권 보호기간 내이면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한다. 이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2년 전인 시점까지 소급 계산한다.

4. 입증책임의 전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일반적인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르는 경우, 피해자는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특허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이 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증명 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데, 저작권법 제52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

저작권법 제52조는 복제품의 출판자, 제작자가 그 출판, 제작에 합법적인 수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복제품의 발행자 혹은 영화저작물이나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컴퓨터소프트웨어, 녹음, 녹화 제품의 복제품의 대여자가 발행, 대여하는 복제품에 합법적인 출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불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출판자와 제작자가 관련된 출판 또는 제작이 합법적 권리의 수권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법복제물로 추정된 것이고, 발행자와 대여자가 그 복제품 또는 대여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불법복제물의 복제품 또는 대여품을 제작했다고 추정된다.

5. 피고의 방어방법

저작권 침해자의 법적 책임을 규정한 제46조, 제47조에서 열거하는 침해

행위의 대다수는 ‘본법에서 다른 규정 있으면 제외’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항변을 통해 원고의 침해주장을 방어할 수 있다. 피고는 첫째로 침해 당했다고 주장되는 저작물이 이미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 아니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고, 저작권 보호 대상의 객체가 아니라는 항변을 할 수도 있다.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일지라도 시사보도, 개인적 이용 등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이므로 권리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Ⅲ. 저작권 침해에 대한 중재

1. 중재기관 약정

중국의 현행 사법제도 현실을 감안할 때 법원이나 법관이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공정성보장이 어렵고 절차의 번잡 및 시간지연(섭외사건인 경우 심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고비용 등의 단점이 있어 가급적 소송은 피하는 편이고, 이와 반대로 당사자가 임의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중재위원을 선정할 수 있어 공정성 보장에 유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영업비밀유지가 용이하다는 등 장점 때문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중재계약을 하면서 많은 경우가 중국측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에 따라 중국에 있는 중재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형평성이 결여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제3국의 중재기관이나 피신청인 소재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중시한다면 제3국의 중재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형평성과 비용,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 소재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중국에는 중재기관이 각 지역별로 다수의 각급 중재기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기관을 특정하고

당해 중재기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관할 중재 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중재와 소송을 병기할 경우에는 중재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북경에 본부를 설치하고 있고 상해와 심천에 분회를 두고 있는 외에 지방에도 각급의 중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지방의 각급 중재위원회는 중재원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하겠으나 지방중재위원회의 경우 중재비용이 저렴하고 중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의 중재기관 중에서는 섭외사 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많은 중재위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중재기관을 지정하는 케이스가 많다.

2. 중국국제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한다면

(1) 중재신청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는 중재위원회에 중재계약 또는 중재약정이 되어 있는 계약서와 중재신청서 및 그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서 기재사항

- 당사자의 성명,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무, 우편 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 중재신청 근거가 되는 중재협의
- 사건 개요 및 분쟁 요점
- 중재청구와 그 근거되는 사실, 이유
- 증거와 증거 취득경위, 증인 성명과 주소 등

※ 청구금액이 인민폐 50만위엔 이하일 경우 간이절차로 진행 가능(일반적으로 중재청 구성 후 3개월 내 종결)

(2) 중재신청수리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에 대해 심사를 하고 수리조건에 부합하면 이를 수리하고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 후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중재규칙과 중재인명부를 송달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분, 중재규칙 및 중재인명부를 송달한다.

(3) 중재위원선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각 1인의 중재위원을 선정하고 쌍방이 협의하여 수석중재위원을 선정하거나 이를 중재위원회에 일임하거나 아니면 각자 1인 내지 3인을 추천하고 중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4) 답변서 또는 반청구서 제출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분을 송달받은 후 45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중재신청 수리 후에도 신청인은 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청구를 승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고, 반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피신청인이 반청구서를 할 경우 중재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형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심리

중재정은 원칙적으로 개정하여 심리한다(중재법 제39조). 다만, 당사자 사이에 개정심리를 하지 않기로 협의가 된 경우에는 출석하여 구두진술을 할 필요가 없고,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및 기타 증거서류 등 서면자료에 근거하여 재결을 할 수 있다.

개정심리를 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20일 전에 개정기일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0일 전에 기일의 연

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기일의 연기 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중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

중재정이 재결을 내리기 전에는 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42조)

(6) 중재재결(판정)

중재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재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다. 소수 중재원의 다른 의견은 재결서에 기입할 수 있다. 중재정이 다수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다.

중재정은 중재정이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중재정의 요구로 중재정위원회 주임이 필요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중재규칙 제42조)

제3절 저작권 침해 사례

1. 인터넷에서 영화를 불법 방영한 사례

【사건개요】

원고: 미국영화협회

피고: 북경재선구주신식기술복무유한공사
(北京在线九州信息技术服务有限公司)

북경재선구주신식기술복무유한공사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티엔티엔짜이시엔’ (天天在线 www.116.com)에서 대중들에게 ‘트리플엑스2’ 및 ‘트로이’ 등의 영화를 상영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판권국은 이 안건을 북경시판권국에서 조사하도록 하였고 북경시판권국의 조사 결과, ‘티엔티엔짜이시엔’ 사이트는 신식 산업부에 등록된 인터넷사이트이지만(등록번호: 京ICP证031060), 이 인터넷 사이트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들에게 ‘트리플엑스2’ 및 ‘트로이’ 등의 영화를 불법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소가 성립한다고 밝혀졌다. 북경시판권국은 북경재선구주신식기술복무유한공사가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하고 과태료 9만위안을 납부하라고 행정처벌하였다.

II. ‘타이션왕’ 소프트웨어 침해 사례

【사건개요】

원고: 미국상업소프트웨어 연맹

피고: 타이션왕(泰神网)

‘타이션왕(泰神网 www.taishen.org)’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Autodesk CAD, Microsoft Office 등 357종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관권국은 인터넷IP주소로 검사한 결과 그 인터넷사이트의 서버가 호남성 이양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호남성판권국에 조사를 지시했다. 호남성판권국의 조사결과, ‘타이션왕(泰神网)’은 호남성 이양시 자강기계공장의 직원 자오권위가 개인적으로 개설한 사이트이며 신식산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2년 자오권위는 이양시 우체국 신식기술분공사에서 가상서버를 빌려 ‘타이션왕(泰神网)’의 이름으로 ‘taishen.org’와 ‘huohuo.com’ 두 가지의 도메인을 신청하였으며 동일한 IP주소(61.137.117.131)로 등록하였다. 자오권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utodesk CAD, Microsoft Office 등 357종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사이트에 복제하여 무료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으며 CD를 제작하여 한 장에 인민폐 25위엔의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하였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2005년까지 자오권위가 얻은 불법이득은 인민폐 3만위엔에 달했으며 컴퓨터소프트웨어 시장의 정상적인 경영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 호남성판권국은 자오권위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하고 과태료 1만위엔과 서비스에 사용된 하드웨어 몰수, 사이트폐쇄 등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III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불법판매 사례

【사건개요】

원고: 미국상업소프트웨어 연맹(BSA)

피고: 소프트웨어 리에쇼우 사이트

‘소프트웨어 리에쇼우(软件猎手)’ 사이트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utodesk Autocad,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등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판매하였다. 상술한 상품의 권리자들은 협회의 구성원으로 Autodesk, Microsoft, Bentley, CNC 등의 회사들이다. 국가판권국은 IP추적으로 이 인터넷사이트의 서버는 북경시전신공사에 위치하며 IP주소가 베이징, 스촨, 칭다오 등 지역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국가판권국은 본 사건을 북경시판권국에 처리하도록 하였다. 2005년 12월 1일 북경시판권국은 스촨성, 칭다오시 판권국에 증거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사결과, 이 인터넷사이트 서버는 북경시전신공사 IDC기계실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법집행기관의 조사결과 신고자가 신고한 권리침해사실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인터넷사이트는 신식산업부에 등기하지 않은 불법 인터넷사이트이기 때문에 북경시판권국은 북경시통신관리국에 그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요청하고 북경시 전신공사에게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IV. 미국영화 ‘슈렉2’ 사건

【사건개요】

《슈렉2》는 미국 드림웍스회사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으로 2004년 5월 미국 등 지역에서 상영되었으며 동년 8월 10일에는 중국에서도 상영되었다. 미국 드림웍스는 중국 국가판권국에 슈렉2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음반영상제품으로 출판을 하기 전에 북경, 상해, 광둥 등 13개 도시에서는 이미 39종류의 불법복제판이 노점상,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통되어 권리침해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신고하였다.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음반영상제품의 권리침해 불법복제행위를 막기 위해 중국국가판권국은 《‘슈렉2’ 불법복제 음반영상제품에 관한 통지》를 반포하였고, 각 지역의 판권국은 국가판권국의 통지와 불법복제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신속히 관련 대책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동년 11월 30일 북경, 상해, 광둥, 중경, 안휘, 요녕, 강소, 복건, 사천, 산둥, 길림 등 지역의 판권행정관리기관은 2600여곳 음반영상제품 판매상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슈렉2 CD 1140장을 몰수하고 음반영상제품 판매업체 2곳을 직권말소시켰으며 52곳에는 과태료 58,000위엔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벌을 했다. 또한 조사에서 드러난 슈렉2의 불법복제 음반영상제품의 불법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사이트 2곳도 처벌하였다.

V. ‘노스페이스’ 등록상표 전용권의 보호사례

【사건개요】

2004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황모와 까오모는 ‘THE NORTH FACE’ 상표의 권리자인 노스페이스의류주식회사(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경시 조양구, 중관촌에서 ‘THE NORTH FACE’ 상표를 도용한 방한복을 생산하였다. 모두 4013벌의 윗옷과 96벌의 외투를 생산하였다. 생산에 투자한 금액은 인민폐 5천2백2십2위엔이었고 이를 통한 불법수익은 모두 인민폐 7만7천4백위엔이었다.

등산용보호자켓과 방한후드자켓등의 상품에 쓰이는 ‘THE NORTH FACE’ 상표와 ‘THE NORTH FACE’ 도안은 중국 상표국에 출원등록된 것으로서 본 상표의 전용권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북경시 공상국 조양분국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53조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실시조례》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5일 황모와 까오모에 대해 즉시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했고, 권리침해상품 방한복 4013벌과 외투 96벌을 압수했으며 과태료 인민폐 20만 위엔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했다.

【시사점】

① 현재 중국의 실태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은 계약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위약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사건 보다는 권리자의 허락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대다수이다.

②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적 증거확보이다. 물적 증거수집 시 침해자측에서 발뺌하기 쉽거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항변의 여지가 있는 증거자료인 경우 공증인을 대동하여 증거수집 자료에 대한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불법행위가 포

착되었을 경우 증거확보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화면을 캡처해두고자 할 때 공증인 입회 하에서 캡처하고 그 자료에 대한 공증을 받는다.)

③ 침해자의 거래처, 수익규모 등에 대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생산자(제작자), 유통판매자, 소비자까지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유통경로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규모 파악에 도움이 된다. 또한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권리자가 그 피해를 산출하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침해자의 불법수익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권리침해자의 침해 행위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고 권리침해자가 손해배상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라면 행정구제, 형사구제, 민사구제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Ⅷ. 상표도용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한 사례

장소	도용상표	사건개요
광둥(广东)	'HP' , '레노보' , '캐논'	'HP' , '레노보' , '캐논' 을 도용하여 프린터 잉크포장지 50만장(인민폐125만위엔)을 인쇄제작
심천(深圳)	'Nokia' 'Motorola' 'SonyEricsoon'	'Nokia' 'Motorola' 'SonyEricsoon' 의 상표를 도용해 핸드폰 포장박스와 설명서 등 157542개 제작
심천(深圳)	'루이비통'	루이비통 상표를 도용하여 만든 완제품 여성핸드백 896개와 반제품 296개를 발견
복건(福建)	'나이키' , '아디다스'	'나이키' 상표도안을 도용하여 운동화 1,600켤레와 '아디다스' 의 상표도안을 도용하여 운동화 12,428켤레를 제작
복건(福建)	'나이키' , '아디다스' , '리복' , '움부라' , '퓨마'	'나이키' , '아디다스' , '리복' , '움부라' , '퓨마' 등의 상표를 도용한 제품 1,643,600개를 발견

위의 사건들은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54조 규정과 《행정 법 집행 기관 범죄혐의안건 이송 규정(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제 5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소재지 공상국에서 소재지 공안국으로 이송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였다.

【참고의견】

중국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많이 달라졌다. 국내기업 외국기업을 막론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 고발 또는 소송제기가 있을 때 종전과 달리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제조자에서부터 유통업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넓혀가며 그들을 상대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구제요청을 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우리 기업도 중국에서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침해자를 상대로 각가지 채널을 통해 능동적이고 끈질기게 구제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은 자기 권리보호에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을 중국의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곧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부록】

중국내 주요 법률사무소 리스트

北京

金杜律师事务所 (<http://www.kingandwood.com/Index.aspx>)

北京市朝阳区东三环中路39号建外SOHO A座31层 89

热 线: 010-58785588 / 010-58785588

传 真: 010-58785599

君合律师事务所 (<http://www.junhe.com/>)

北京市东城区建国门北大街8号华润大厦20层 78

电话: 010-8519-1300

传真: 010-8519-1350

中伦金通律师事务所 (<http://www.zhonglun.com/>)

北京市朝阳区建国路118号招商局中心01楼12层 83

热线: 010-6568 / 1188-6540

传真: 010-6568 7317 / 1838, 6568, 1022

大成律师事务所 (<http://www.dclf.com.cn/>)

北京东城区东直门外大街48号东方银座写楼12层 89

电话: 010-84476600

传真: 010-84476208

竞天公诚律师事务所 (<http://www.jingtian.com/>)

北京市朝阳区朝外大街20号联合大厦15层 65

电话: 010-6588-2200

传真: 010-6588-2211

金诚同达律师事务所 (<http://www.jctdlaw.com/>)

建国门内大街22号华夏银行大厦11层 72

电话: 010-85237766

传真: 010-65185057 / 65263519

北京市德恒律师事务所 (<http://www.dhl.com.cn>)

北京 西城区金融街19号富凯大厦B座12层 96
电话:010-66575888 / 010-65232180
传真:010-65232181

国浩律师集团 (<http://www.grandall.com.cn/>)

电话: 010-65171188
传真: 010-65176800

观韬律师事务所 (<http://www.guantao.com/>)

电话: 010-66578066
传真: 010-66578016

炜衡律师事务所 (<http://www.whlaw.cn/>)

北京市海淀区中关村南大街1号友谊宾馆迎宾楼7层 67
电话: 010-68499372(总机)
传真: 010-68499346

建元律师事务所 (<http://www.genesislawfirm.com.cn/>)

电话:86-10-66579966
传真:86-10-66579808

上海

第一律师事务所 (<http://www.wwwround.com/lawyer/>)

上海 宋园路62弄2号1楼近边防局
电话: 021-62093753 / 62957480
传真: 021-62096621

锦天城律师事务所 (<http://www.allbrightlaw.com.cn/default.htm>)

上海市锦天城律师事务所 上海 世纪大道88号金茂大厦25楼 101
电话: 021-6105-9000
传真: 021-6105-9100

段和段律师事务所 (<http://www.duanduan.com/>)

上海世纪大道88号金茂大厦2806室(邮政编码:200121)
电话: 021-5047-1878
传真: 8021-5047-1221

中信正义律师事务所

上海 胶州路58号12楼 83

电话: 021-62525451

传真: 021-62561021

上海市光明律师事务所 (<http://www.brilliance-law.com/>)

上海市天目西路99号汇贡大厦9楼 邮编: 200070

电话: 021-63808800

传真: 021-63818300 / 63818500

方达律师事务所 (http://www.fangdalaw.com/html_cn/index.php)

上海市 南京西路1515号 嘉里中心20楼

电话: 021-52985566

传真: 021-52985577 / 52985599

小耘律师事务所 (<http://www.rwlayers.com/>)

上海市延安东路100号18楼

电话: 021-63265800

传真: 021-63218890

广东

广东法制盛邦律师事务所 <http://www.everwinlawyer.cn/>

广州市体育东路122号羊城国际商贸中心东塔7楼

电话: 020-38870111

传真: 020-38870222

广东环球经纬律师事务所 <http://www.gkl.com.cn/>

广州市东风东路555号粤海集团大厦12楼

电话: 020-83858533 / 83859703

传真: 020-83857100

广东岭南律师事务所

广州市新港西路135号中山大学西门内 87

电话: 020-84036472 / 84037130

广东广大律师事务所 <http://www.gdlawyer.com/>

广州市先烈中路69号东山广场27楼 74

电话: 020-87322666

传真: 020-87322706

广东海印律师事务所 <http://www.hylaw.cn>

广州市滨江东路500号

电话: 020-34286605 / 34297793 / 34280685

传真: 020-34298169

广东华商律师事务所 <http://www.huashang.cn>

深圳市福田区深南大道4001号时代金融中心14楼整层

电话: 020-86755 / 83025555

传真: 020-86755 / 83025068 / 83025058

广东晟典律师事务所

深圳市华强北路4002号圣廷苑酒店B座19-20层

电话: 0755-83789590 / 13510125675

传真: 0755-82075163

广东广和律师事务所 <http://www.ghlawyer.net/>

深圳福田区福虹路世贸广场A座20楼 85

电话: 0755-83679909 / 83662984

传真: 0755-83679694 / 83674205

山东

山东德衡律师事务所

山东 青岛市香港西路52号丙 101

电话: 0411-70801747

传真: 0411-70801747

齐鲁律师事务所 <http://www.qilulawyer.com/>

山东 济南市二环东路山航大厦16楼 91

电话: 0531-85698266

传真: 0531-85698268

山东琴岛律师事务所 <http://www.qindaolaw.com/>

山东 青岛市香港中路20号22楼 85

电话: 0532-85023100

传真: 0532-85023080

山东舜天律师事务所

山东 济南市历下区经十路65号三庆汇文轩 54

电话: 0531-2950698

传真: 0531-2927553

山东舜翔律师事务所 <http://www.shxlawyer.com/>

山东 济南市羊头峪路2号鸿苑大厦16层 54

电话: 0531-86319058 / 86319190

传真: 0531-82963316

浙江

浙江泽大律师事务所 <http://www.chinalegaltheory.com/>

浙江 杭州市延安路126号, 耀江广厦A座4楼 116

电话: 0571-87709708

传真: 0571-87709517

浙江天册律师事务所

浙江 杭州市杭大路1号黄龙世纪广场A座11楼

电话: 0571-87901111

传真: 0571-87901500

浙江五联律师事务所 <http://www.zjlawyer.com/>

浙江 西湖大道58号华顺大厦12层

电话: 0571-7822111

传真: 0571-87801462

浙江星韵律师事务所 <http://www.xingyunlawyer.com/>

浙江 浙江省杭州市延安路528号银泰·标力大厦B座13

电话: 0571-85101888

传真: 0571-85774336

浙江六和律师事务所 <http://www.liuhelaw.com/>

浙江 杭州市体育场路218号10-11楼 55

电话: 0571-85055613 / 85055611

传真: 0571-85055614 / 85055877

湖南

湖南天地人律师事务所 <http://www.titanlaw.com>

湖南 长沙市韶山北路139号文化大厦15楼

电话: 0731-2767148

传真: 0731-2767150

湖南云天律师事务所

湖南 长沙市韶山北路维一星城智免座801、802、803 50

电话: 0731-4896761

传真: 0731-4896761

湖南通程律师集团事务所

湖南 长沙市劳动西路377号中扬大厦22楼 61

电话: 0731-5384101-8028

传真: 0731-5384397

河南

河南金学苑律师事务所

河南 郑州市 文化路90号

电话: 0371-3943287

河南世纪通律师事务所

河南 郑州市金水路99号建达大厦三层

电话: 0371-6250188 / 6259274

传真: 0371-6250288

金博大律师事务所 <http://www.kblawyer.net/>

河南 郑州市文化路56号金国大厦19-21层

电话: 0371-65367831

传真: 0371-63928119

河北

河北世纪联合律师事务所 <http://www.sjlawyer.cn/>

河北 石家庄 中山西路486号

电话: 0311-83059589 / 83059585

三和时代律师事务所 <http://www.sanheshidai.com/>

河北 石家庄市新华东路209号石房大厦七层

电话: 0311-87628288 / 87628298

传真: 0311-87628299

江苏

江苏法德永衡律师事务所 <http://www.fdyh.cn/>

江苏 南京市珠江路222号长发科技大厦13层

电话: 025-83193322

传真: 025-83191022

江苏致邦律师事务所 <http://www.zhibanglawyer.com/>

江苏 南京市草场门大街101号14楼

电话: 025-86223030

传真: 025-86221733

江苏维世德律师事务所 <http://wisdom.winjia.com>

江苏 南京市广州路140号随园大厦17层

电话: 0514-7980423

传真: 0514-7869153

重庆

重庆红岩律师事务所 <http://www.hongyanlawfirm.com/>

重庆 渝中区长江一路1号中华广场19楼

电话: 023-63609003 / 61687799

传真: 023-63609003

重庆学苑律师事务所 <http://www.xueyuan.com.cn/>

重庆 沙坪坝区正街168号嘉新大厦13楼

电话: 023-65451828

传真: 023-65452130

吉林

吉林常春律师事务所 <http://www.cclawyer.net>

吉林 长春市解放大路585号

电话: 0431-85805873 / 0431-86752652

传真: 0431-8691021

安徽

安徽华人律师事务所 <http://www.ahhr.net/>

安徽 合肥市长江中路90号4楼

电话: 0551-2640039

安徽安泰达律师事务所 <http://www.antaída.com/>

安徽 合肥市屯溪路538号华地大厦南2楼

电话: 0551-3622288 / 3622978 / 3622578

传真: 0551-3623069

安徽杰创律师事务所 <http://www.ah-jc.com/>

安徽 合肥市荣事达大道70号振信大厦A座10楼 48

电话: 0551-2626389

传真: 0551-2676764

辽宁

辽宁申扬律师事务所 <http://www.sylawyer.com/>

辽宁 沈阳市和平区北五经街17号

电话: 024-22718165

传真: 024-22827654

辽宁同方律师事务所 <http://www.tf-lawyer.com.cn/>

辽宁 沈阳市和平区中山路111号亚洲商务贸易中心5楼

电话: 024-82705555

传真: 024-62101610

辽宁亚太律师事务所

辽宁 大连市人民广场2号

电话: 0411-3672212

传真: 0411-3682826

黑龙江

黑龙江孟繁旭律师事务所 <http://www.mfxlawyer.com/>

黑龙江 哈尔滨市南岗区西大直街241号

电话: 0451-86350670 / 0451-86350671

传真: 0451-86350679

福建

福建天衡联合律师事务所

福建 厦门市湖滨南路388号国贸大厦15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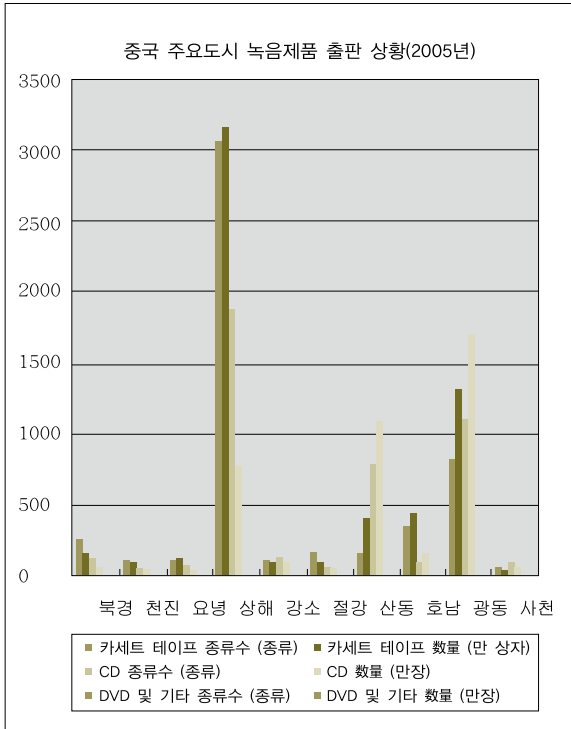
电话: 5899703

传真: 5899701

内蒙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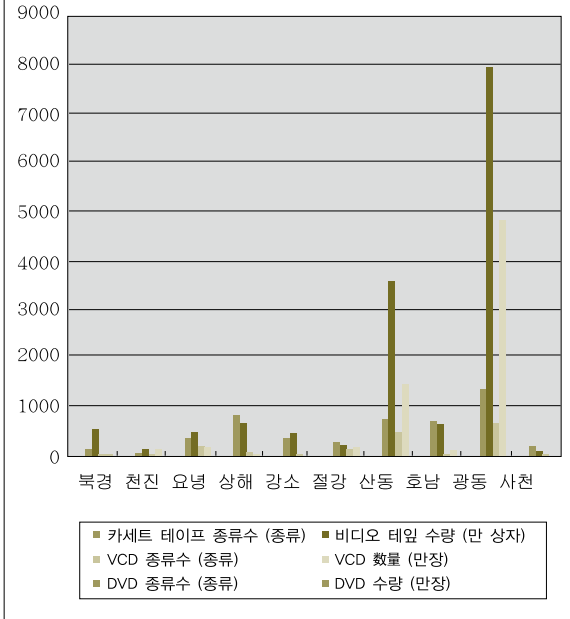
信泽法园律师事务所 <http://www.xzfy.com/>

内蒙古 呼市新城区北垣东街28号 47
电话: 0471-4815314 / 4816058 / 4815979
传真: 0471-4815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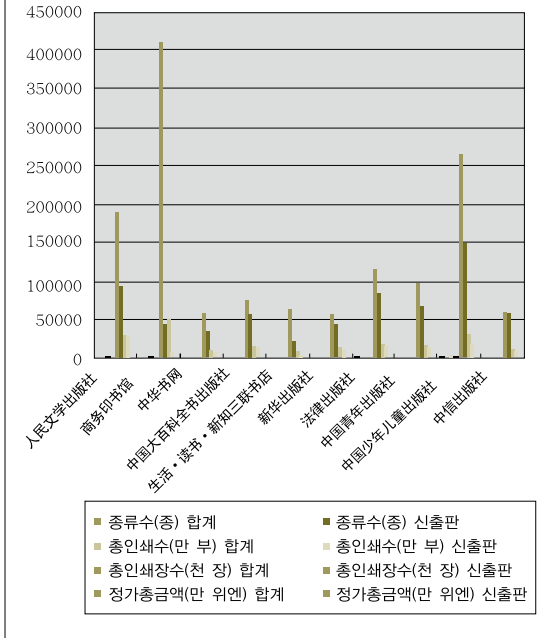
2006년 중국통계연감

중국 주요도시 영상제품 출판 상황(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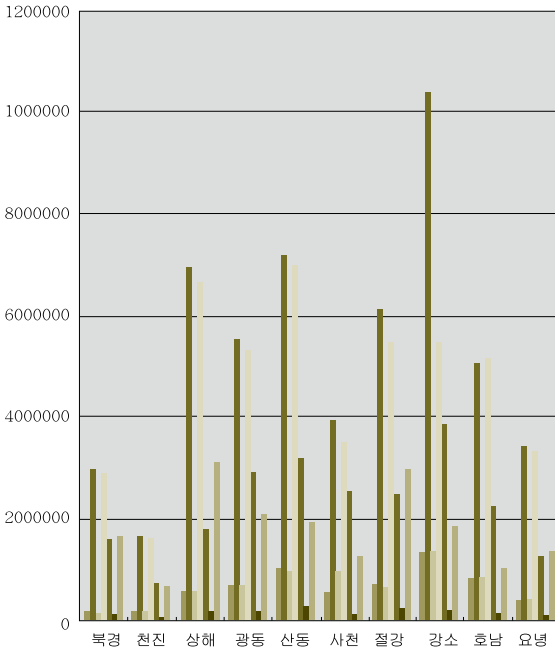
2006년 중국통계연감

전국출판사도서 출판수량(2005년)



2006 중국출판년감

전국출판물발행, 수입, 판매, 저장 상황(2005년)



수입 수량
 수입 금액
 판매 수량
 판매 금액
 판매 순판매액
 참고저장수 수량
 참고저장수 금액

2006 중국출판년감

최근 영화산업종류와 수량

년도	스토리 작품(부)	미술작품(부)	과학교재 작품(부)	다큐멘터리(부)	TV영화
2000	88	4	49	10	NA
2001	88	1	56	9	NA
2002	100	2	60	7	NA
2003	140	2	53	6	NA
2004	212	4	30	10	NA
2005	260	7	37	2	129

2006 중국 문화산업 년도 발전보고

예술공연단체 공연상황(2005년)

종류	공연장소(만 단위)	농촌공연	관중수(만 명)
총계	45.9	26.9	38891
국유극단	29.9	15.9	28962
단체경영극단	10.7	7.1	7141
희극, 아동극, 어릿광대극	0.9	0.1	1516
가무극단	1.4	0.4	1407
가무단, 경음악단	4.0	1.2	3839
문화선전공작단, 선전팀, 몽고우란무치(乌兰牧骑) 공연단	4.0	2.4	3079
악단, 합창단	0.2		231
희곡극단	25.9	20.3	24377
경극	1.3	0.8	1181
곡예, 서커스, 인형극, 피영단	8.0	1.8	2783
종합예술공연단체	1.5	0.7	1659

2006년 중국통계연감

출판시스템 및 출판사이윤증가 상황

년도	출판시스템	출판시스템증가율	출판사	출판사증가율	출판사이윤 출판시스템이 윤 중에 차지 하는 비례
1979	32388		8293		
1980	44327	38,86%	11444	38%	25,82%
1981	52034	17,39%	15531	36%	29,85%
1982	48751	-6,31%	12045	-22%	24,71%
1983	51953	6,57%	9856	-18%	18,97%
1984	58260	12,14%	13725	39%	23,56%
1985	89504	53,63%	30657	123%	34,25%
1986	77550	-13,36%	28842	-6%	37,19%
1987	79258	2,20%	29676	3%	37,44%
1988	86063	8,59%	32755	10%	38,06%
1989	107666	25,10%	46592	42%	43,27%
1990	116938	8,61%	52491	13%	44,89%
1991	131904	12,80%	62787	20%	47,60%
1992	136683	3,62%	70140	12%	51,32%
1993	146896	7,47%	89373	27%	60,84%
1994	125510	-14,56%	80058	-10%	63,79%
1995	173775	38,46%	109623	37%	63,08%
1996	276141	58,91%	178294	63%	64,57%
1997	370027	34,00%	255597	43%	69,08%
1998	464886	25,64%	331686	30%	71,35%
1999	532432	14,53%	389740	18%	73,20%
2000	527100	-1,00%	380900	-2%	72,26%
2001	533700	1,25%	381900	0%	71,56%
2002	508700	-4,68%	339500	-11%	66,74%

2006 중국출판년감